

강릉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9-20호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05월 07일

강릉시 의회의장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유도로 교통사고 빈도를 줄여 인적, 물적피해를 줄여나가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정의(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안 제4조)
- 교통안전교육(안 제5조)
- 교통사고 예방 지원(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0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4,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강릉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1회에 한하여 1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 제공과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조(교통안전 교육) 시장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통사고 예방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법규명: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

제·개정안 내용	의 건	비 고